

기본교육 이수하면 승랍 4년 추가

〈1995년 이후 출가자 한정〉

■ 187회 중앙종회 9개 중법 제·개정

종단 입법기구인 중앙종회가 187회 임시회를 통해 사찰법 등 9개의 중법 제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중법 제개정안은 새롭게 제정된 ‘사찰법’이다. 사찰법 제정 성안을 위한 공청회과정에서 입장차가 컸던 창건주 권리 승계문제는 창건주권리자의 도제(법건당) 뿐만 아니라 은사, 사형사제, 사형사제의 도제에게도 승계할 수 있도록 승계 범위를 확정지었다. 창건주 권리를 승계하지 않고 사망했을 경우에는 도제로 구성된 회의에서 다수결로 회의 구성원 중에서 창건주 권리 승계자를 정하도록 했다. 도제가 없을 경우에는 사형사제로 구성된 회의에서 다수결로 회의 구성원 중에서 창건주 권리 승계자를 정하도록 했다. 도제나 사형사제의 회의로 창건주 권리 승계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찰로 귀속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신도가 창건주인 경우, 창건주 권리는 종단 승려에 한해 승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창건주 승계를 하지 않고 사망한 후에는 공찰로 귀속하도록 했다.

○…중창주 권리는 중창주심사위원회에서 중창주 인정여부를 심사하고 중창주 권리는 승계하지 못하고 입적시까지만 인정하도록 못박았다.

중창주 인정 범위도 △사찰 창건 후 공찰 등록 △사지(옛 절터) 복원 후 공찰 등록 △미입주사찰의 종단 점유권 확립 △사설사암의 공찰로 등록 전환 △쇄락 및 피폐한 공찰 사격 및 역합의 현격히 격상 등으로 한정했다. 이와함께 창건주 권리 매매와 임대 등 임의로 양도 양수하거나 종단 승인 없이 사찰재산 명의 변경, 미등록 사설사암 창건주권리자 및 실질적 운영권자 등에 대해서는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주지 추천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요구, 약속한 자는 공권정지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계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산내암자 감원은 교구본사 및 말사 주지가 산중고유 방식으로 추천된 종단 승려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산내암자도 분담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논란을 빚던 1995년 이후 출가한

창건주 권리 승계범위 은사·사형사제 등 구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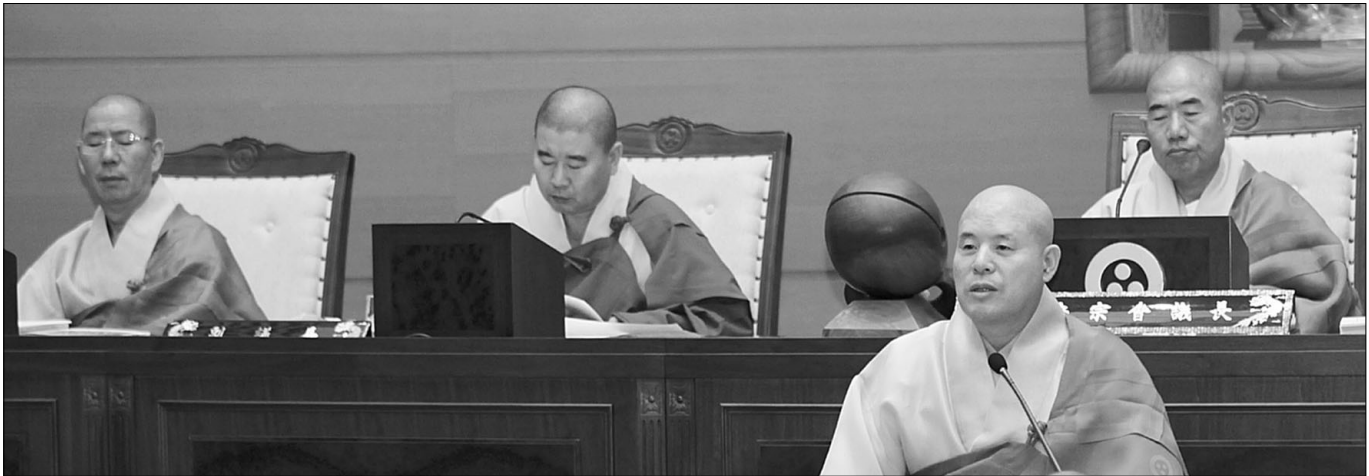
중창주는 입적시까지 인정 산내 암자도 분담금 납부

직영사찰 관리인 임기 2년 보장…연임도 가능

법규위원 자격요건 강화 심판 공정성 제고 기대

‘승랍과 세수 규정 삭제’ 종무원 자격 법제로 규정

스님에 대한 승랍기산문제도 기본교육을 이수한 뒤 4년을 더해 기산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됐다. 개정된 ‘승려법’에 따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9일 제187회 임시종회 인사말을 통해 “종단적 과제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중앙종회와 상시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다”며 조언과 협조를 당부했다. 뒷줄 왼쪽부터 호계원장 법등스님, 종회부의장 정문스님, 종회의장 부선스님.

면 1995년 이후 사미, 사미계를 수지한 승려의 승랍기산은 비구계 또는 비구니계 수계일을 기준으로 하되 종단 기본교육 이수기간 4년을 더해 기산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승려분한 미신고로 승적이 말소된 스님은 특별분한신고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승적 말소 회복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승려분한신고를 하지 않아 승적이 말소된 승려는 교구본사를 경유해 총무원에 말소 회복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앙심사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심사에 결정하도록 못박았다. 예비승이라는 명칭을 없애고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로 호칭을 명확히 규정했다.

○…‘직영사찰법’이 개정돼 직영사찰 관리인도 2년 임기를 보장받고 연임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업무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임기중이라도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임명되는 직영사찰 관리인은 중앙종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했다.

○…초법적인 심판을 제한하기 위해 법규위원회의 관장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법규위원회법’도 개정됐다. 개정안에는 법규위원회의 심판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규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중앙종회의원, 중법에 규정된 각종 위원,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및 교구본사 국장 이상의 직 중 어느 하나의 직에 2년 이상 재직할 경력을 갖추도록 명시했다. 또한 행정처분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했으며 법규위원에 대한 결격사유, 겸직금지, 의무, 제적, 기피, 회피조항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공권정지 이상 징계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사면 및 복권 후 5년이 경과하지 못하면 법규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종무원법’도 개정돼 교역직 종무원 자격에서 승랍과 세납 규정은 삭제되고 법제로만 교역직 종무원의 자격을 규정하게 됐다. 또한 말사에 문제가 발생 시 임기1월 이내의 임시 ‘재산관리인’을 파견하던 규정을 개정해 3월 이내로 ‘사찰

관리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승려법’ 개정에 따른 승랍기산 방식이 바뀔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중정법’도 개정됐다. 교구본사 주지는 법제 종덕 이상, 연령70세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하며 말사 주지는 법제 종덕(정덕) 이상의 조건을 갖추도록 변경했다.

○…중앙종회의원에 대한 불징계권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앙종회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 결과 찬성 33표, 반대 21표로 부결됐다.

○…호계원장과 호계위원, 법규위원의 자격요건 변경을 골자로 한 ‘중헌’ 개정안은 각 원장과 위원의 자격 규정을 법제 규정으로 일괄 변경하기 위해 차기 회기로 이월했다. 또한 사찰이나 스님이 설립한 법인 산하에 사찰이 있는 법인의 종단 등록 절차와 관리 방안, 종단의 지원 등을 규정한 ‘법인법’과 중재조정합의결정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호계원법’ 등은 차기 회기로 이월됐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社告

독자들의 경책을 기다립니다

창간 반세기를 넘은 불교신문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불교신문 지면에 대한 평가를 월1회 공개적으로 받고자 합니다. 지면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불교신문의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려는 취지입니다. 지면 내용에 대한 의견(비판과 칭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정된 의견은 신문 지상에 소개합니다. 독자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내 용** : 불교신문 지면 내용에 대한 의견 - 보도방향, 기사내용, 오탈자, 사진, 편집 등

■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8매 이내

■ **마 감** : 매달 25일 오후5시

■ **접 수** : opinion@ibulgyo.com

■ **시 상** :

- 최우수 의견(1건) 10만원권 문화상품권 또는 소장용 목판 <반야심경> 12만원 상당
- 우수 의견(2건) 불교신문 무료구독(1년) + <부처님 생애> 1권

* 선정된 의견에는 소정의 원고료도 함께 지급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독자와 불자들의 아이디어를 지면에 반영해 신문을 쇄신하려고 합니다. 한국불교의 중흥과 불교신문의 변화를 염원하는 많은 분들의 참신한 기획안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아 래 -

💡 **제 목** : 제1회 불교신문 연례제 기획안 공모.

💡 **내 용** : 제목 + 취지 + 연재기간 + 인적사항(연락처) 등을 포함한 불교신문 연례 기획안 (최소 6개월 이상의 연재물)

💡 **접 수** : webmaster@ibulgyo.com

💡 **마 감** : 10월9일 오후 5시.

💡 **당선작 발표** : 10월25일 불교신문 홈페이지

💡 **시 상 내역**

• 최우수 기획상 1명 상금 50만원 + 총무원장 스님 선물(순금 핸드폰고리 1개)

• 우수 기획상 3명 10만원권 상품권 또는 소장용 목판 <반야심경> 12만원 상당

• 참여 기획상 10명 <부처님 생애> 1권씩 (응모자 가운데 추첨하여 10인 선정)

※ 채택된 기획안은 신문사 내부 논의를 거쳐 필자를 선정합니다.

■ 결의문 2개 채택

조계종 중앙종회가 서산대제 국가 제향 복원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코엑스 부지 내 고층건물 신축을 반대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중앙종회는 지난 20일 임시회에서 ‘서산대제(西山大祭) 국가 제향(祭享) 복원 촉구 결의문’과 ‘한국종합무역센터(코엑스)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 반대를 위한 결의문’ 등을 채택, 발표했다. 이는 대의기구인 중앙종회가 종단 안팎의 주

서산대제 국가제향 복원 촉구 코엑스 세부개발계획 ‘반대’ 새 도로명 주소관련건은 ‘이월’

요 현안에 대해 종도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종회는 일제에 의해 폐지된 뒤 60년 넘게 중단된 서산대제의 국가 제향 복원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종회는 “서산대제는 조선 선조 때부터 춘추로 제향이 모셔졌을 뿐만 아니라 정조

때에는 해남 대흥사 내에 표충사(表忠祠), 묘향산 보현사 내에 수충사(酬忠祠)라는 사당을 짓고 국가에서 봄 가을로 제향을 모셔오다 일제 조선총독부에 의해 폐지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면서 “국권회복 후 6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통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스런 일”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종회는 이어 “임진왜란으로 인한 국가의 위기상황에 국란을 타개한 의승군의 충수이자 총지휘자로서 누구보다도 그 공헌이 큰 서산대사의 대제는 당연히 국가적 행사로서 봉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국가 제향 복원을 촉구했다.

서울 봉은사 맞은편에 위치한 한국종합무역센터 부지에 지상 39층 고층건물 신축에 대한 반대 입장이 분명히 밝혔다. 종회는 결의문에서 “2000년 ASEM 개최 당시 한국무역센터가 고층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봉은사는 경관과 조망권, 쾌적한 종교환경을 침해하는 상황에서 대대적 차원에서 적극 협조한 바 있다”면서 “13년이 지난 현재 한국무역센터는 도시공간내의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잊고 또 다시 봉은사 앞을 가로막는 고층건물을 신축해 사찰환경

을 크게 훼손하려고 한다”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종회는 이어 “쾌적성 추구, 역사문화경관 보전 등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환경을 중요시하는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한국종합무역센터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건으로 상정됐던 ‘새 도로명 주소법 시행에 대한 결의문’은 총무원과 행정안전부가 협의를 진행중에 있는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본 뒤 오는 11월 개원하는 제188회 정기회에서 논의키로 뜻을 모았다.

박인탁 기자

종립 비구니 영어전문교육기관

2012년도 ‘조계종 국제불교학교’ 학인(비구니) 모집

“한국불교 세계화의 새 장을 열어갑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은 2012년도 『조계종 국제불교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신입 학인(비구니)스님의 지원서를 9월 30일(금)까지 접수하며, 현재 기본교육기관에 4학년으로 재학 중인 사미니 스님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계종 국제불교학교』는 학인스님들이 학교(도량) 내에 상주하면서, 원어민강사와 전임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일상생활과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전문교육기관입니다.

『조계종 국제불교학교』를 졸업하신 스님들은, 종단 지원 하에 국제교류 활동, 국제포교, 외국인 템플스테이 지도,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진행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 **지원자격** 1) 기초영어회화가 가능한 조계종 비구니 스님
2) 국제포교에 원력이 있는 조계종 비구니 스님
※ 2012년 구축제 수지 예정인 사미니도 지원 가능

- **제출서류** 1) 지원서(소정양식) 1부
2) 수행이력서(종단양식) 1부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방법 :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하단→학인 모집 홍보 배너 클릭

● **모집인원** 10명

● **접수 마감일** 불기2555(2011)년 9월 30일

- **특 전** 1) 수업료 전액 종단 지원
2) 3급 승가고시 2년 자격 인정(2년)
3) 해외 연수
4) 국제활동 시 종단 지원
5) 외국인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우선 임용

- **교육도량** 화운사(경기도 용인시 소재)

● 교육내용

- 불교교리, 불교수행, 참선, 템플스테이 지도방법, 세계불교의 오늘
- 영어발표 기술(프레젠테이션 스킬), 영어회화, 영어뉴스 시청, 영어 읽기 및 쓰기
- 상담심리, 스피치 기술, 인간관계 매니지먼트, 타종교의 이해 등
- 해외연수

- **교육 환경 및 시설** 1) 교육비 전액 종단 지원
2) 전임교수 2명과 원어민 강사 4명 상주
3) 거주 방사 1인 1실

● **면 접** 불기2555(2011)년 10월 12일(시간과 장소는 개별통보)

● **합격자 발표** 불기2555(2011)년 10월 28일(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입학일(예정)** 불기2556(2012)년 3월 5일

● **문의 및 접수** 주소: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45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전화: 02)2011-1818 이메일: kimiyuna83@buddhism.or.kr